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장인홍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1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6월 9일

발 의 자 : 장인홍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현아, 문영민, 장홍순,
유 용, 김문수, 오경환,
김창수, 강성언, 김용석(서초),
박호근, 송재형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공익제보자가 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와 관련된 공익제보를 하였을 경우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,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서 정한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그 자녀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공익제보로 인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1조, 제73조, 제89조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0조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학할 수 있도록 함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공익제보자 지원 등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공익제보자 지원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학할 수 있도록 함.</u></p>